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849
----------	-------

발의연월일 : 2026. 10. 8.

발 의 자 : 이수진 · 최혁진 · 송옥주
남인순 · 민병덕 · 전진숙
김정호 · 백혜련 · 이언주
안도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군사교육 소집기간은 의무복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음. 또한, 보수는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중보건의사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역 주민에게 필수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핵심 인력이나, 현역병(육군 기준 1년 6개월)의 2배가 넘는 복무 부담과 낮은 처우로 신규 편입이 급감하여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0년 3,363명에서 2026년 593명으로 감소하였고, 2026년 신규 편입 인원은 98명으로 당해 연도 복무만료 예정 인원(450명)의 22% 수준에 그침. 이에 따라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가 2026년 1,023개소에 이르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이 주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음.

이에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군인보수의 한도에서 지급하도록 한 제한을 폐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중보건 의사 확보 기반을 회복하여 보건 의료 취약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또한, 의료 취약지의 보건진료소에서 근무하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직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데 반해, 의료 취약지에서의 근무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미비한바, 정당한 보상과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24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48호),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2호),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1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85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군사교육소집기간 외에 3년으로”를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군인보수의 한도에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수준의”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에 대한 보수 및 지원) ①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보수의 수준 등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보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며,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과 그 외 직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상 및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교통, 직무교육, 경력개발 등에 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의무복무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병역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공중보건의사로 편입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복무 중인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은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인력수급계획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편입시기별 단축기간을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공중보건 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병역 법」 제55조에 따라 받는 <u>군사</u> <u>교육소집기간</u> 외에 <u>3년으로</u> 한 다.	제7조(의무복무기간) ① ----- ----- ----- <u>군사</u> <u>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u> <u>으로</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보수 등) ① 보건복지부장 관은 공중보건의사에게 <u>군인보</u> <u>수의 한도에서</u> 보수를 지급한 다. 다만, 제5조의2제1항제5호 의 기관 또는 시설 중 「의료 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 간 의료기관에 배치된 공중보 건의사의 보수는 해당 민간 의 료기관의 장이 지급한다.	제11조(보수 등) ① ----- -----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u> <u>라 적정수준의</u> ----- ----- ----- ----- -----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u>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u> <u>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삭 제></u>
<u><신 설></u>	<u>제24조의2(보건진료 전담공무원</u> <u>등에 대한 보수 및 지원) ①</u> <u>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지방</u> <u>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1호</u>

에 따른 공무원으로 보고 보수
의 수준 등 지급기준을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의 보수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지근
무수당, 특수업무수당 등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
다.

② 제15조제2항에 따라 보건진
료소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
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건진료소를
운영하는 시장·군수·구청장
이 적정 수준의 보수를 지급하
며,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 등 의료 취약지 근무환경
과 직무내용을 고려한 수당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
건진료 전담공무원과 그 외 직
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 향
상 및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
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교통, 직무교

육, 경력개발 등에 관한 재정적
·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